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11호 2018. 3.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90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35호 삼척시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 기준 고시 ----- 47
- 삼척시 고시 제3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57
- 삼척시 고시 제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52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1
- 삼척시 공고 제256호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7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조례 제 190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요금의 면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3~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에 동승하고 타인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단, 표창 등을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
- 7.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통·이장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 차량 1대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제차량은 제외한다.

- 1. 시책 참여 차량(5부제 등)으로 시책참여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20(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 3. 삼척시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100분의 50
-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50
-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차량 : 100분의 5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및 주차표 등)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의 이용시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정기주차권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2.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3. 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공영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관리규정과 계약 등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의 산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 산출방법은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삼척시 재산 대부료 또는 도로점용료 적용

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삼척시 재산 대부료 적용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금 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 제1호~제4호	경쟁가격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재산대부료상당액	제9조제1항 적용
기타의 경우	경쟁가격	입찰가격	제9조제1항 적용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산출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적용

2.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 적용

가. 수입항목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장이 정하는 수입

나. 지출항목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 유지비,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정방법에 대한 요금 산출 시

시장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위탁료의 납부) ① 관리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료 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2.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반기별로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1월 말일, 7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연 15%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매년 분기 초 1월 말일,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연15%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위탁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

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와 같다.

-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투명성 등)
-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갱신 심사를 거쳐 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

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담당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관리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관리시간 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2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장의 설치 등)①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임시공용주차장의 설치)①시장은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무상사용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상 토지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 무상사용 시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대상토지의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25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운반·기계기구 등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제26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를 제외한다.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한차종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 2. 제한시간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 3. 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등)

제2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형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제29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km)/8)
-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 퍼센트

②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0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1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
-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제32조(보조의 방법) ① 제31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 보조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공사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강제징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부 설 주 차 장

제35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강화기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강화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한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 2.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
- 3.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월정기주차권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3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36조제1항에 따라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39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치를 철거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40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규모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42조(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43조(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44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별표 1의제2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회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마다)	2시간초과 (1구획당30분마다)		주간	야간
요금	500	1,000	6,000	75,000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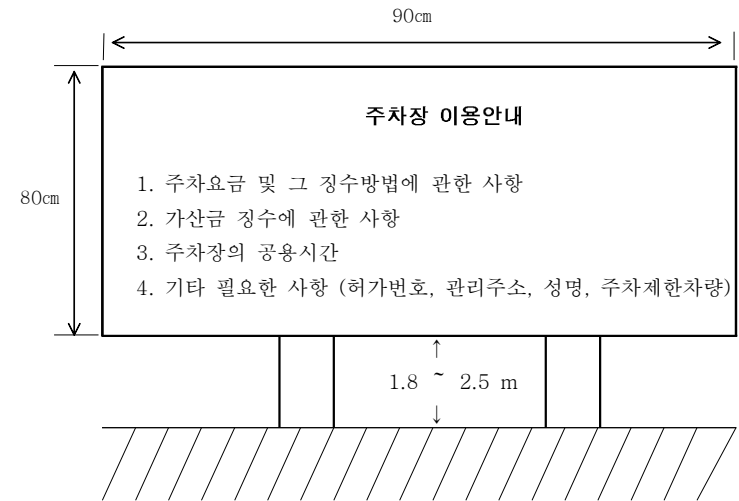
※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 고 -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한 시간부터 1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는 요금표와 같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보며 야간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가. 4월 ~ 10월 09:00 ~ 20:00
 - 나. 11월~ 3월 09:00 ~ 19:00
-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단,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구획당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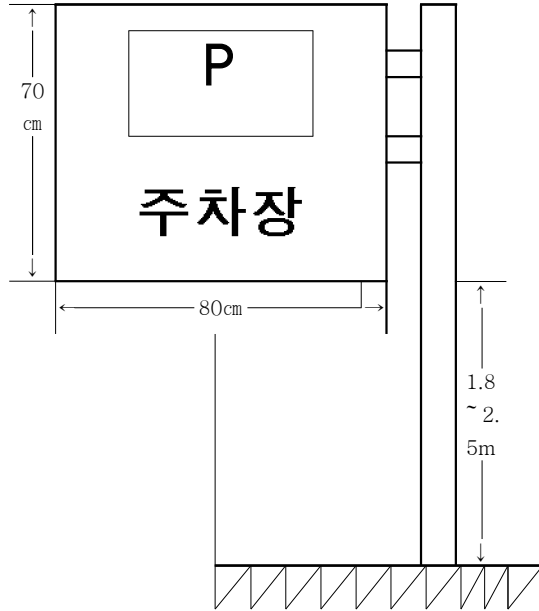
※ 비 고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6조제2항 관련)



※ 비 고

재 료 : 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문자 및 기호(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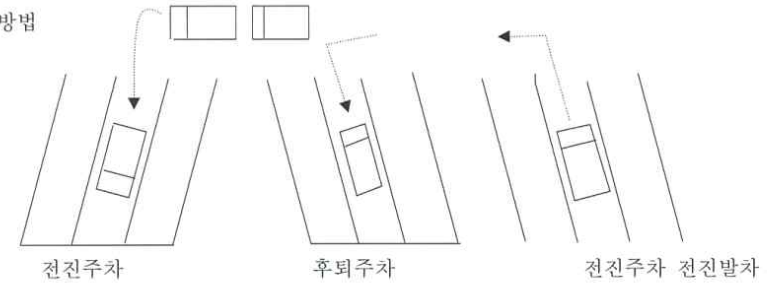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세로25cm)-문자(가로 17cm× 세로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를 처리하여야 함.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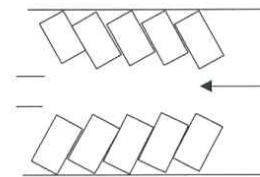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제27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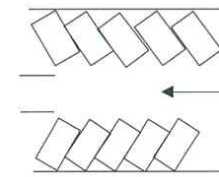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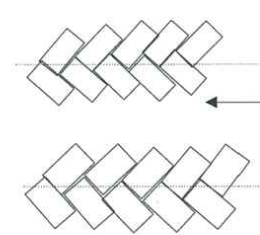
가. 3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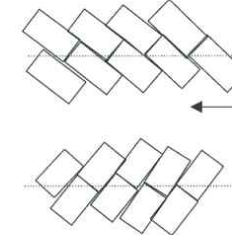
나. 45°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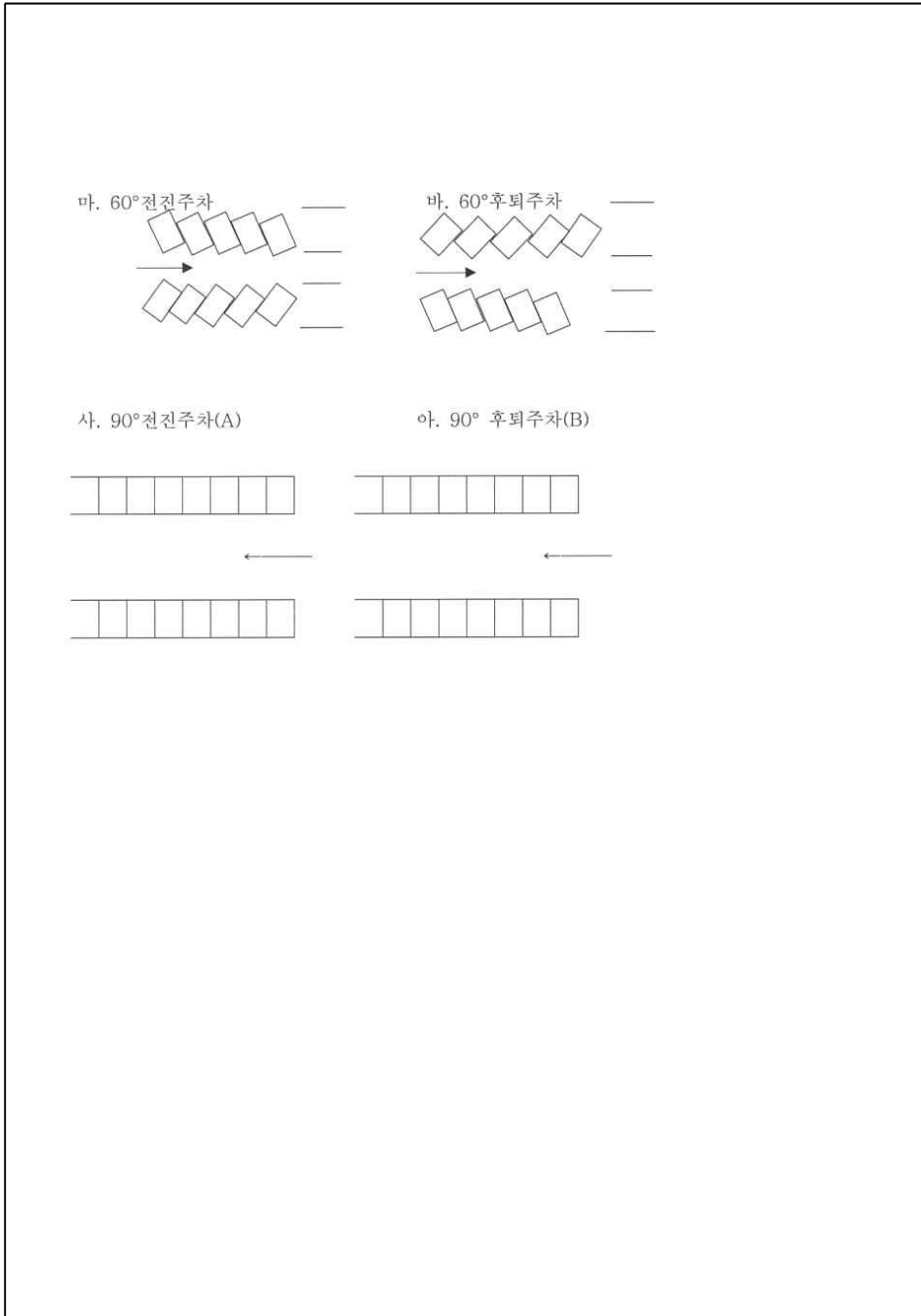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35조 관련)

시설물	설치대상 지역별 기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2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80㎡당 1대 (시설면적/28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20㎡당 1대 (시설면적/32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40㎡당 1대 (시설면적/24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37조제2항 관련)

(앞 면)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삼척시장 (인)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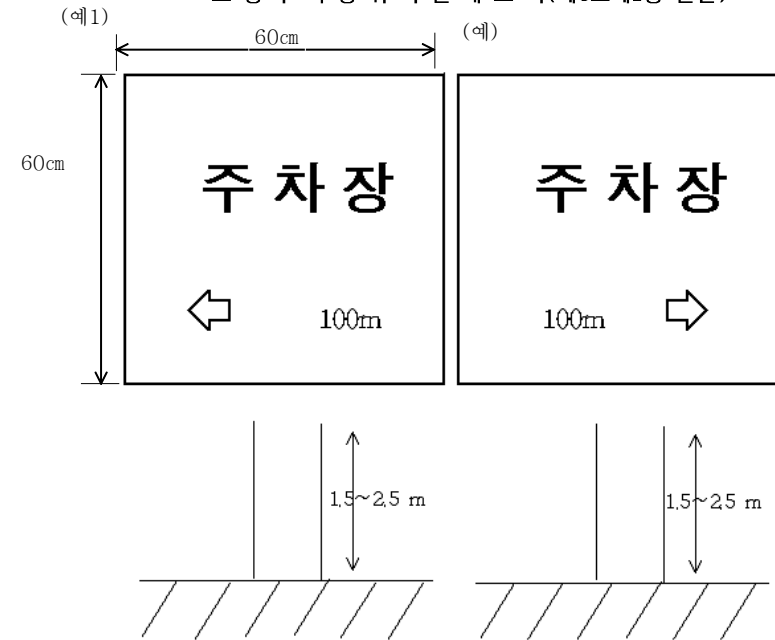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삼척시장이 발행한 것임.
2. 앞면 표지 중 건축물의 위치, 사용기간, 이용 주차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노상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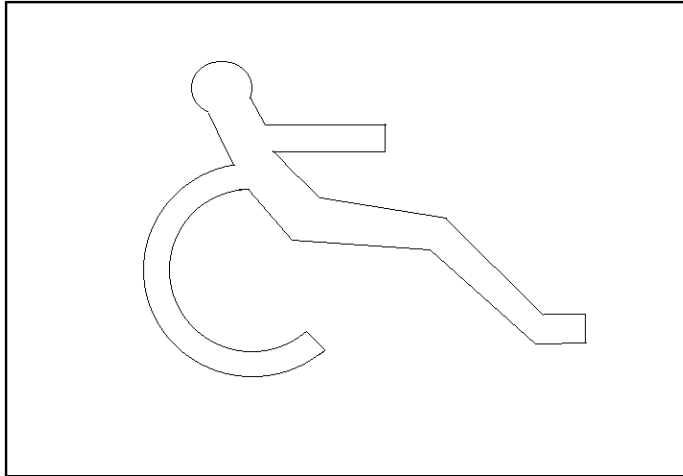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써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제41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28Cm×세로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제23조제1항 관련)

삼척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사업 종료 후 1년간 토지의 무상사용과 부지정비 작업을 승낙하며, 공사시공은 물론 준공 후에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토지무상사용 조건】

1. 부지 평탄화 및 노면정지 후 부순 돌 등 혼합골재 부설
2.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포장재 사용 불가
3. 건축 등 토지주의 부지 활용계획이 있을 시 부지 내 모든 주차차량을 즉시 이동조치 할 것

◎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붙임 :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끝

20

승낙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

삼척시장 귀하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주차 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31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 면적 2.3m×5m이상
-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
-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
- 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제9조제5항 관련)				
구분		보조금액(차량 1대기준)		비고
		보조범위	지급한도액	
1	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간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90% 이내	800,000원	
2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직각 주차시설)	설치비용의 90% 이내	1,100,000원	
3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평행 주차시설)	설치비용의 90% 이내	1,500,000원	
4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이내	1,700,000원	
5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이내	2,000,000원	
*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원 부			영 수 증			주 차 표		
번 호	주 차 장 소		번 호	주 차 장 소		번 호	주 차 장 소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입차 시간	시 분		입차 시간	시 분		입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주차 료	금 원정		주차 료	금 원정		주차 료	금 원정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전면)

(이면)전면은 카본지

(전면)이면은 카본지

[별지 제2호서식] (제2조 관련)

← 4cm →

회수주차권

금 원권

발행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 이 회수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삼 척 시 장 (직인)

4cm

12cm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관련)

정기주차권

금 원권

발행일 : 년 월 일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삼척시장 (직인)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제5조 관련)

차량번호 귀하

주차장소	차종	사용일시	주차시간	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납부장소
	보통						
	소형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택) 직장)
주 차 장 설치계획	주 차 장 위 치		주차대수	
	형 태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		
	공사기간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접수자 확인사항>				
건축물관련 확인사항	연면적	m ²	대지면적	m ²
	주차시설 확보의무	대	건축주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진입도로 폭	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	종합의견	가능 불가능
	가옥 안 여유 공간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비고 1. “접수자 확인사항”란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기재
2. 완공 후 제출서류: 건물주 각서, 공사비 영수증, 계좌번호

<별지 제6호서식>

각 서(제9조제2항 관련)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m²
-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삼척시청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 사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인)

삼척시장 귀하

<내집주차장 관리카드 뒷면>

(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공사후 사진) 백색실선 도색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 기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18 - 35호

삼척시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 기준 고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8조 및 제9조 1항,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삼척시 임대농기계 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운송대상 농기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16일

삼척시장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 기준

(단위 : 원 / 1일)

- 자가 운송의 경우 임대료의 50%감면
- 임대료 산정기준
 - 농업기계 구입가격 평균 0.5% 산정(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공정선기 농업기술센터 내방 작업
- 승용차 적재 가능한 장비 9기종 비운송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합계	117	197	655			
소형 관리기	일륜관리기	ASC-610,630	13	8,000	4,000	
	이륜관리기	ASC-620,640	14	8,000	4,000	
	구굴기	SDR-300	16	4,000	2,000	
	베토기	SDR-3	15	4,000	2,000	
	중경제초기	SDR-350	6	4,000	2,000	
	미니관리기	4마력	3	8,000	4,000	
	초경량관리기	PR-2200	3	10,000		비운송
		2마력	6	3,000		비운송
	7	10	76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보행 관리기	관리기	AMC-900SM	43	16,000	8,000	
	중경제초기	RT-60	3	4,000	2,000	
	구굴기	DR-30	6	4,000	2,000	
	베토기	RD-3	3	4,000	2,000	
	예취기	AR-1200CN	6	8,000	4,000	
	예취기	AR-1200N	6	8,000	4,000	
	쟁기	AP-25	3	4,000	2,000	
	복토기	SR-1500	3	4,000	2,000	
	베토기	VR-500	3	4,000	2,000	
	휴립기	AF-300	9	4,000	2,000	
	휴립피복기	FM-120	11	4,000	2,000	
	비닐피복기	AM-180	6	4,000	2,000	
	쇄토기	TR-60	4	4,000	2,000	
	13	13	106			
승용 관리기	승용관리기	CFM-1200	5	42,000	21,000	
	로터리	로터리(CR-1250S)	1	8,000	4,000	
	휴립피복기	비닐피복기	4	18,000	9,000	
	비료살포기	FS-300	4	4,000	2,000	
		4	4	14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경운기	경운기로터리	DT10DE	6	22,000	11,000	
	마늘파종기	CH-10	5	22,000	11,000	
	콩탈곡기	TI-2004	3	8,000	4,000	
	트레일러탈곡기	1100X1700	3	4,000	2,000	
	땅속작물수확기	DR-650	4	4,000	2,000	
	퇴비살포기	CJS-1000	8	24,000	12,000	
		TKT-S100A-1	2	24,000	12,000	
	마늘수확기	K-800	3	10,000	5,000	
	7	8	34			
차량	퇴비살포기	차량탑재용	1	16,000	8,000	
	1	1	1			
휴대	충전분무기	KCS-632A	3	3,000	비운송	
		KCS-5620A	6	3,000	비운송	
	전동전자기위	K-05620	8	5,000	비운송	
	2	3	17			
농용로더	스키드로더	SL-802	2	92,000	46,000	
		V67, SL6800	3	92,000	46,000	
	지게발	.	2	6,000	3,000	
	베일집게	BG-200S	2	6,000	3,000	
		HMM35AC	2	12,000	6,000	
		AMI1600	4	6,000	3,000	
	3	6	15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 (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전기	잡곡탈곡기	SB-100	8	8,000	4,000	
		KONG-1	3	8,000	4,000	
	콩탈곡기	TI2007	5	8,000	4,000	
		ESP-2(발산)	7	8,000	4,000	
	경량콩탈곡기	SB-1000S(발산)	3	8,000	4,000	
	마늘쪽분리기	DRSP-350K,MK-1	5	16,000	8,000	
	마늘줄기절단기	BHS-207	3	8,000	4,000	
	마늘쪽선별기	DRGS-350K,MS-1	4	8,000	4,000	
	파이프벤딩기	B.S-15	3	16,000	8,000	
	다목적 풍구	111X55X115	2	4,000	2,000	
	중자발아기	IR-300s	2	3,000	비운송	
	콩정선기	YBS1000G	3	5,000	30분 3,000 1시간 5,000	센터내 작업
		WC-102	1	5,000	30분 3,000 1시간 5,000	센터내 작업
		YBS2000G,SB-250T	3	9,000	30분 5,000 1시간 9,000	센터내 작업
	자동호스릴	BG-160H	3	8,000	4,000	
	양파파종기	OSE-11	1	36,000	18,000	
옥수수탈립기	HC-777	3	22,000	11,000		
탈망기	JK-530	2	8,000	4,000		
13	17	61				
승용	퇴비살포기	HSC-2000	1	44,000	22,000	
		HSC-1000	3	40,000	20,000	
	농용굴삭기	vio10-2A	3	100,000	50,000	
		U-10-3	3	100,000	50,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승용	액비살포기	TI1000DL	1	78,000	39,000	
	다목적운반기	HSC-LD500	2	36,000	18,000	
	자주식베일러	JCB1500	3	180,000	90,000	
		MC90S-TWIN	1	102,000	51,000	
	고소작업차	SSVC3500H	1	64,000	32,000	
	6	9	18			
보행	박피기	E-150	1	18,000	9,000	
	동력살분무기	3NF-7000	8	3,000	비운송	
		MD8070	5	3,000	비운송	
		KPB-8000D	6	3,000	비운송	
	동력예취기	TB43, 계양	5	3,000	비운송	
		BHK-435S	9	3,000	비운송	
	공예취기	BH-710A	3	22,000	11,000	
	동력파종기	JAS-901B	2	16,000	8,000	
		JAS-1000B	1	22,000	11,000	
	동력배토기	AVR-650	1	16,000	8,000	
	채소이식기	TP-10	2	22,000	11,000	
		KTP-30	1	22,000	11,000	
		SKP-100-KR	1	50,000	25,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보행	동력수확기	MT-200	1	24,000	12,000	
	사료작물수확기	HC-90, ij850m	5	22,000	11,000	
	진기찌파쇄기	S-O2	2	32,000	16,000	
		S-O1	2	42,000	21,000	
	콩파종기	HG10A(1조)	34	3,000	비운송	
	보행이앙기	DP480	4	16,000	8,000	
		PF48(동양)	3	16,000	8,000	
	비닐피복기	BG-777B	3	3,000	비운송	
	다목적운반기	DYS800DLH-B	1	78,000	39,000	
		HC-500CDL,T-600L	5	22,000	11,000	
	양파이식기	OPK-4-KR	1	120,000	60,000	
	자주식공탈곡기	HBT-1000	3	32,000	16,000	
	동력제초기	HR-900	4	16,000	8,000	
	동력분무기	SJA-1000A	1	32,000	16,000	
동력중경제초기	SCA-35	1	5,000	비운송		
19	28	115				
트랙터	트랙터	G430	4	126,000	63,000	
		XU6158-NC	4	178,000	89,000	
		RX630PSC	2	250,000	125,000	
		P7175EDPS	1	300,000	150,000	신규등록
	복토직파기	KDS-900	2	20,000	10,000	
	무논정지기	K4500, K5000	2	6,000	3,000	
	논두렁조성기	TANTAN-K3	3	16,000	8,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트랙터	다목적파종기	HG900	3	10,000	5,000	
	비닐수거기	IVT-3000	2	10,000	5,000	
	원판쟁기	W62-DP	4	10,000	5,000	
	퇴비살포기 (유기질)	500KG, 700KG	2	10,000	5,000	
		IOD-500A	2	10,000	5,000	
		GW-900H	1	14,000	7,000	
	퇴비살포기	CJS-2000(45↑)	3	14,000	7,000	
		CJS-3000(50↑)	6	16,000	8,000	
		HM-4000	1	22,000	11,000	
		RTS-35H	2	22,000	11,000	
		TKT-S2500	2	14,000	7,000	
	땅속작물수확기	DR-1400CA,고구마	1	14,000	7,000	
		DR-1400A,마늘	2	10,000	5,000	
		DRGH-1500(마늘)	2	10,000	5,000	
		HD-1600G(마늘)	6	10,000	5,000	
		DR-1400AT,감자	1	14,000	7,000	
		DR-1400T,석발	4	14,000	7,000	
		DR-1400T,석발	2	14,000	7,000	
		DR-1300A,구근	1	10,000	5,000	
		SH-1600JS	1	14,000	7,000	
SH-1400JS		3	14,000	7,000		
GWD-1500T,1600T	2	14,000	7,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트랙터	휴립복토기	WJ2-300,2조	3	10,000	5,000	
		WJ-300,1조	3	5,000	3,000	
	감자수확기	MIMI SS-1	2	80,000	40,000	
	휴립피복기	RM-2000(40)	2	14,000	7,000	
		BG800B	1	14,000	7,000	
		WJCM-1000,1500	2	10,000	5,000	
	콩탈곡기	TI-2005	3	10,000	5,000	
		TI2005	1	10,000	5,000	
		ESP-1	6	10,000	5,000	
	로터베이터 (크랭크)	X160	3	20,000	10,000	
	로터베이터	WJ185D	2	10,000	5,000	
		YJ170OOSG	4	10,000	5,000	
		SN220L, H205	6	14,000	7,000	
		C195	2	20,000	10,000	
		210cm	1	40,000	20,000	신규등록
	농용돌파쇄기	1FSU-90.8	1	31,000	16,000	
		KP-125W	1	160,000	80,000	신규등록
	석회살포기	EC-1000A	2	18,000	9,000	
	비료살포기	EC-500H	3	6,000	3,000	
		IHD-320	3	6,000	3,000	
STH-1000S		4	18,000	9,000		
심토파쇄기	KP-5-R	3	14,000	7,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트랙터	치즐플라우	YPC-5, 7	4	14,000	7,000	
		YPC-9	1	16,000	8,000	
	딸기두둑다짐기	MSG-160R	1	14,000	7,000	
	원형베일러	CR10c	2	62,000	31,000	
		RB1000DF	2	72,000	34,000	
		K-BALERS	2	84,000	42,000	
		TCR2220AN	1	76,000	38,000	
	사각베일러	2545S(CICORIA)	1	44,000	22,000	
		1000L(LERDA)	1	36,000	18,000	
	랩피복기	LW500A	2	28,000	14,000	
		RF1002A	4	58,000	29,000	
		MWM1071W	1	44,000	22,000	
	반전집초기	LRT420	2	10,000	5,000	
		HR300	3	14,000	7,000	
		LRT320	4	10,000	5,000	
	디스크모어	LDM4	2	14,000	7,000	
	모아컨디셔너	EXTRA624	1	44,000	22,000	
		EXTRA-117	2	20,000	10,000	
		NM200H	4	36,000	18,000	
	옥수수수확기	MH90S	1	44,000	22,000	
MC923		1	40,000	20,000		
LCH125		1	98,000	49,000		
LCH 1		1	44,000	22,000		

구분	기종	형식	대수	임대료(원)	자가운송시 감면액	비고
트랙터	엔살리지적재함	TLH90	1	14,000	7,000	
		TLH90-TS	1	14,000	7,000	
	옥수수파종기	SP530-4	1	36,000	18,000	
		SP530-2	1	28,000	14,000	
		SP540-4(시비)	3	36,000	18,000	
	다목적줄파종기	M250	2	22,000	11,000	
		NINA250	1	22,000	11,000	
	옥수수베일러	MR-810	2	140,000	70,000	
	옥수수랩피복기	LW500C	2	32,000	16,000	
	베일집계	BG -210S	3	10,000	5,000	
트레일러	T-8	2	14,000	7,000		
굴삭기	KTS-645B	1	16,000	8,000		
장작패기	RCA-380	1	44,000	22,000		
진압기	TKR-2600J	1	14,000	7,000		
마늘파종기	YM-GP7	1	66,000	33,000	신규등록	
	40	97	198			

삼척시 고시 제2018-3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0.
삼척시장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회계별				
합 계	611,666,454	495,045,770	116,620,684	23.6%
일반회계	567,646,128	459,620,319	108,025,809	23.5%
특별회계	44,020,326	35,425,451	8,594,875	24.3%
상수도사업	21,347,534	15,656,997	5,690,537	36.4%
하수도사업	5,704,771	4,435,771	1,269,000	28.6%
주택사업	66,460	50,000	16,460	3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77,383	9,777,383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546,961	542,000	4,961	0.9%
의료급여기금	1,093,883	1,404,937	△311,054	△22.1%
자활기금운영	1,387,050	1,387,050	-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425,630	73,000	1,352,630	1852.9%
주차장	542,520	542,520	-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128,134	1,555,793	572,341	36.8%

삼척시 고시 제2018 - 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2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20-6 (정상동) 외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43-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20-6 (정상동)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 구간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 활용도로명	
2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46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26-50 (우지동)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우지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43-1, 43-15, 53-2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1길 22-52 (남양동)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중앙시장길분기)	
4		이	하	여	백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구분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43-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20-6 (정상동)	3 건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46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26-50 (우지동)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3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43-1, 43-15, 53-2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1길 22-52 (남양동)		20180323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삼척시 공고 제2018 - 252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19일

삼척시장**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자치법규명**

-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의 상위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 나. 행정자치부 예규(2015.12.24.)를 반영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 법령 조문 변경(제1조)
 - 상위 근거법령 조문 변경
 -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 삭제 및 지방회계법 제정, 시행
- 나. 평가항목 주요 경영지표 변경(별표)
 -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유동성 평가지표, 배점방법 조정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세무과
 - 전화 : 033-570-3788 ○ FAX : 033-570-3134
 - ※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금고약정서에 쌍방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할·에는”를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I. 총괄

현 행	개 정 안
【 세 부 항 목 】	【 세 부 항 목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나. -----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총 자본비율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 (-----, --)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 (-----, --)
-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 2점)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

다.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현행**】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0%이상	9%이상~10%미만	8%이상~9%미만	7%이상~8%미만	7%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1) 총 자본비율(안정성, 7점) 【**개정안**】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8%이상	6%이상~8%미만	4%이상~6%미만	4%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7.26.>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세무과 세무과장 김진대
연락처	(033) 570 - 3290

【붙임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256 호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3. 21.

삼척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
- 나. 사업위치 : 삼척시 건지동 173번지 ~ 자원동 39-3번지 일원
- 다.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라.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2. 관계 도서의 열람

- 가. 열람기간 : 2018. 3. 21. ~ 2018. 4. 4.(15일간)
- 나.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488) 또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공고문 참조
- 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	삼척시 자원동	40	도	482	209
		50-6	도	46	6
		38-1	도	2,781	2,446
		산8-3	도	406	186
		산7-4	도	1,589	1,176
		38-4	전	59	59
		산7-9	도	20	20
		산7-6	도	47	17
		33-2	전	14	1
		33-4	도	187	9
		33-9	도	75	8
		34-1	도	30	30
		34-5	도	50	50
		산1-3	임	187	4
		28-2	도	1,506	1,113
		산1-2	도	383	90
		산1-14	도	35	17
		산1-4	도	1,592	1,48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	삼척시 자원동	39-3	대	157	11
		39-4	전	289	195
		37-1	대	208	208
		37-2	도	139	111
		38-3	전	489	489
		50-3	도	1,020	85
		36-1	묘	354	354
		51-1	도	602	526
		35-1	도	592	592
		38-2	전	17	17
		36-2	묘	139	139
		산7-5	임	200	200
		산7-2	임	99	99
		25-4	도	498	230
		34-6	대	192	192
		51-4	도	330	130
		34-2	도	177	177
		33-3	전	187	10
		34-4	도	159	66
		207	천	20,807	2,103
	삼척시 원당동	산50-15	도	1,883	79
		산49-4	도	1,810	180
		산50-3	도	496.0	109
		169	천	45,747	357
	삼척시 건지동	108-1	천	19,927	2,830
		108-5	제	2,248	286
		170	도	3,419	134
		108-3	제	961	53
		108	전	415	415
		118-2	전	244	244
		117-9	전	293	293
		173	대	21,083.4	161
		117-13	전	568	568
		176	대	13,755.3	218
		117-12	전	396	396
		111	전	23	23
		113	전	166	166
		115-1	전	414	414
		114	전	200	200
		175	도	2,663	119
90-1	전	123	18		
115-3	전	50	4		
지장물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